

구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 7.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유관기관간 협의 승인된 「구미시 통합방위 예규」를 반영
- 효율적인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임무를 구체화하고, 민관군간의 유대와 협력강화로 작전수행의 효율성과 지역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 심의사항에 지역예비군의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신설(안 제2조제8호)
-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작전지원, 예비군지원, 총무 및 민방위지원에 관한 임무를 구체적으로 제시(안 제4조제3항)
- 통합방위예규가 전·평시 통합방위작전의 근간이 되도록 조례반영(안 제4조의 2 신설)

3. 참고사항

-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 제17조제3항
-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3

구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대책

제3조제2항제1호 중 “지역군부대 작전참모”를 “지역군부대 작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무) ① 협의회 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평시 통합방위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며, 지역단위 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한다.
2.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전반을 지휘·감독한다.
3. 각종 위원회·협의회 및 지원기구와 군·경 관련 기관단체에서 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 조정 및 의결한다.

②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의·조정한다.
2.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을 협의·조정한다.
3.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조정하며 시행을 감독한다.

4. 협의회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전담당 간사

- 가. 협의회 주무간사로서 간사회의 운영
- 나. 제반 작전상황의 분석과 대책 수립
- 다. 기능별 제반사항을 종합 분석하고, 개선방안 강구
- 라. 정기 또는 수시 통합방위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 마. 분석된 결과와 개선방안을 협의회에 상정토록 준비
- 바. 그 밖의 사항

2. 예비군담당 간사

- 가. 향토방위훈련과 예비군육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 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의 지원
- 다. 그 밖의 예비군에 관한 사항

3. 총무담당 및 민방위담당 간사

- 가. 협의회 및 지원본부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및 행정지원
- 나. 정기 또는 수시 개최되는 협의회 및 지원회의 준비
- 다. 협의회 및 지원본부 회의결과와 토의사항에 대한 기록 유지
- 라. 민방위대 운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수행
- 마.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의 지원·조정
- 바.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통합방위작전 등) 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사항이 발생되면 지역군부대에서 작성한 「구미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총무업무담당과장, 민방위업무담당과장, 예비군업무담당과장

제6조제2항제2호 중 “동원장교”를 “동원과장”으로 한다.

별표 제10호 중 “한국통신공사 구미전화국장”을 “KT경북법인사업단장”으로 하고,
제14호 중 “새마을운동구미시지회장”을 “구미시 새마을회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구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명 띄어쓰기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생략) 1.~7. (생략) <u>〈신설〉</u>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8.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 14조의 3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 3에 따른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대책	· 협의회 심의사항 신설
8.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9. (현행 제8호와 같음)	
9. 통합방위작전등 훈련에 참가한 국가 방위요소의 구성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10. (현행 제9호와 같음)	
10. 통제구역 설정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11.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 1. 작전담당 간사 : 지역군부대 작전참모 2. ~ 4. (생략) 5. 심리전담당간사 : 심리전업무담당과장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1. 작전담당 간사 : 지역군부대 작전과장 2.~4. (현행과 같음) 5. <삭제>	· 명칭 변경
제4조(임무) 의장 및 위원의 임무는 다 음 각호와 같다.	제4조(임무) ① 협의회의 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협의회 임무를 구체적 제시
1. 의장 가. 전 평시 통합방위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 운용하며, 지역단위 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1. 전시·평시 통합방위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 합 운용하며, 지역단위 방위대책을 수 립·시행한다.	
나. 협의회를 소집, 회의를 주재하고 협의회 의 운영 및 업무 전반을 지휘 감독 한다.	2.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협 의회의 운영 및 업무전반을 지휘·감 독한다.	
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및 지원기구와 군 경 관련 기관단체에서 제의한 안건 을 통합하여 심의 조정 및 의결한다.	3. 각종 위원회·협의회 및 지원기구와 군· 경 관련 기관단체에서 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 조정 및 의결한다.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2. 위원 가. 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의조정한다. 나.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을 협의 조정한다. 다.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 조정하며 시행을 감독한다. 라. 협의회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u>〈신 설〉</u>	②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의·조정한다. 2.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을 협의·조정한다. 3.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조정하며 시행을 감독한다. 4. 협의회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전담당 간사 가. 협의회 주무간사로서 간사회의 운영 나. 제반 작전상황의 분석과 대책 수립 다. 기능별 제반사항을 종합 분석하고, 개선방안 강구 라. 정기 또는 수시 통합방위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마. 분석된 결과와 개선방안을 협의회에 상정토록 준비 바. 그 밖의 사항 2. 예비군담당 간사 가. 향토방위훈련과 예비군육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의 지원 다. 그 밖의 예비군에 관한 사항 3. 총무담당 및 민방위담당 간사 가. 협의회 및 지원본부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및 행정 지원 나. 정기 또는 수시 개최되는 협의회 및 지원회의 준비 다. 협의회 및 지원본부 회의결과와 토의사항에 대한 기록 유지	• 협의회 간사 임무를 구체적 제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u>〈신 설〉</u> 제6조(실무위원회) ① (생략) ② 실무위원회는 부시장을 의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총무담당으로 한다. 1. <u>심리전업무담당과장, 총무업무담당과장,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예비군업무 담당과장</u> 2. <u>군부대 작전 또는 동원장교</u> 3.~4. (생략) 【별표】 구미시통합방위협의회 위원선정기준표 1. 구미시의회의장 2. 구미경찰서장 3. 경상북도구미교육청 교육장 4. 지역군부대장 또는 군부대 대표 5. 구미세무서장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미시협의회장 7. 구미시상공회의소 회장 8. 구미소방서장 9. 농협중앙회구미시지부장 10. <u>한국통신 구미전화국장</u> 11. 한국전력공사 구미지점장 12. 구미시재향군인회장 13. 국군 제202 기무부대구미파견대장 14. <u>새마을운동구미지회장</u> 15. 여성단체협의회장 16.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라. <u>민방위대 운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수행</u> 마. <u>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의 지원 조정</u> 바. 그 밖에 <u>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u> 제4조의2(통합방위작전 등) 협의회는 <u>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사항이 발생되면 지역군부대에서 작성한 「구미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u> 제6조(실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1. <u>총무업무담당과장, 민방위업무담당과장, 예비군업무담당과장</u> 2. <u>군부대 작전 또는 동원과장</u> 3.~4. (현행과 같음) 【별표】 구미시통합방위협의회 위원선정기준표 1. 구미시의회의장 2. 구미경찰서장 3. 경상북도구미교육청 교육장 4. 지역군부대장 또는 군부대 대표 5. 구미세무서장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미시협의회장 7. 구미시상공회의소 회장 8. 구미소방서장 9. 농협중앙회구미시지부장 10. <u>KT경북법인사업단장</u> 11. 한국전력공사 구미지점장 12. 구미시재향군인회장 13. 국군 제202 기무부대구미파견대장 14. <u>구미시 새마을회장</u> 15. 여성단체협의회장 16.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 구미시 통합방위 예규 적용에 대한 근거 마련 • 명칭 변경